

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
議案番號	183
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3. 7. 10.
提出者：尹泰鳳議員外8人

1. 主 文

地方自治法 第50條 第2項 및 우리區議會委員會條例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'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(案)을 審査하기 위하여 동 條例 第5條에 의해 委員의 選任은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된 議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함.

2. 提案理由

地方自治法 제118조 및 우리區議會 會議規則 第60條에 의하여 永登浦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'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(案)을 審査하기 위하여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함.

永登浦區廳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

의안 번호	177
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：1993. 7. 12.
발의자：배기한의원외8인

1. 제안이유

가. 地方自治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,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가.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대상

- (1) 구청장
- (2) 부구청장
- (3) 총무국장
- (4) 재무국장
- (5) 시민국장
- (6) 도시정비국장
- (7) 건설국장
- (8) 보건소장

(9) 각 동장(서영동 1~22)

3. 관련법규

- 가. 地方自治法 제37조
- 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
- 다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

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

1. 목적

가. 地方自治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,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.

2. 관계 공무원 출석 일시

- 가. 일 시：'93. 7. 21(수) 14:00 (1일간)
- 나. 장 소：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
다. 출석 대상 공무원

- (1) 구청장
- (2) 부구청장
- (3) 총무국장
- (4) 재무국장
- (5) 시민국장
- (6) 도시정비국장
- (7) 건설국장
- (8) 보건소장
- (9) 각 동장(서영동 1~22)

3. 구정질문 범위

- 가. 구정업무 전반